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정보의 접근성 제고 등〉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59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접근성 제고	3
2.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실시 요건 추가 등	8
3.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등 근거 마련	15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17.

3. 회 부 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8년부터 자율등록방식으로 도입·운영되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물유통이력의 효율적인 추적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신설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 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수산물 생산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기록·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 나.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자에게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63조제2항제5호 신설).
- 다.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IV. 검토의견

1.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접근성 제고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는 경우 소비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개정).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① ~ ③ (생략)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u>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u> ,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 <u>소비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u> ----- ----- ----- ----- <u>.이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의 대상 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u>사항은</u>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 ----- ----- <u>사항과 제4항</u> <u>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u>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7조는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자로서 수산물의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¹⁾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고 수산물에 그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개정안은 이와 같은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함에 있어 소비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규정을 보면 시행규칙 별표2에서

1) 제27조제1항은 유통·판매자가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유통·판매자가 의무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QR코드’ 등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법체계로도 이력추적관리번호 및 QR코드의 표기 등 휴대전화를 활용한 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이 가능함.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사례]

1.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사항	※ 표시사례
가. 표지	
나. 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QR코드	

□ 다만, 개정안은 소비자가 이력추적관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이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이력정보 공개 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참고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이력정보 공개 관련 유사 입법례 조문내용 비교]

법률명	조문내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하는 자 2.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⑨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의 농산물 이력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⑩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9항에 따른 이력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관리대상가축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u>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③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개정안은 안 제27조제4항 전단에 ‘소비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후단에서 다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두 내용은 사실상 소비자의

이력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라는 동일한 목적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문 내용의 중복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조문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실시 요건 추가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품목을 지정하는 요건에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며(안 제31조제1항),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하는 자에게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안 제31조제3항 및 제63조제2항),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신고 세부사항 중 지정 유효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①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u>거래하는 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이하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라 한다)</u> 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수입유통이력”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① ----- ----- <u>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국민보건 또는 공정거래를</u> ----- ----- ----- ----- -----.

② (생 략) <u><신 설></u> ③·④ (생 략) ⑤ 그 밖에 <u>유통이력수입수산물</u> 별 신고 절차, 수입유통이력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u>해양수산부장관</u>이 정한다. 제6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u>유통이력수입수산물</u> 별 지정의 유효기간 및 연장, 신고절차----- -----<u>대통령령</u>-----. 제6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1)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품목 지정요건 추가 등

- ☐ 현행법은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에 대해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수입유통이력)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음식점이나 소매업자 등 유통의 최종 단계에서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수입 유통이력 신고의무를 지는 주체로 보기 어렵고, 실제 하위법령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²⁾에서도 소매업자를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하여 왔음에도 그러한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는 수입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³⁾.

□ 또한, 현행법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을 유통이력 관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수입수산물 등이 그 대상이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 암컷대게를 수입·유통하는 과정에서 국산 암컷

2)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입법례에서도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제1항)에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후 일본 암컷대게로 위장하여 판매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기된 바 있고,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수입유통이력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관리법」⁴⁾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산란기 암컷대게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유통은 가능하여 일본에서 수입한 암컷대게가 유통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존 국민보건 외에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수입유통이력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장에서의 수입유통이력 관리 필요성에 부응하는 한편, 공정거래를 위해서도 유통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관계 입법례와의 균형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⁵⁾는 공정거래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 농산물등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4) 제14조(포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5) 제10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①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 농산물등을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공정거래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등(이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공정한 유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수입유통이력 관리의 지정요건을 추가하고, 수입유통이력 관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2)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양도자의 고지 의무 추가

- 안 제31조제3항은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에서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라 함)가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현재 해양수산부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양수자에게 양도한 수산물이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거나,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관리의무 통지서를 출력해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하위법령에서는 수입수산물의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양수자에게 신고의무의 존재를 알리도록 하는 것은 대규모로 수입수산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양수인이 양수한 수입수산물이 수입유통이력 신고가

필요한 품목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 유통이력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전체 유통단계에 대한 전수조사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개정안은 이러한 하위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이를 통해 수입유통이력 신고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여짐.

-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고시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하는 의견임.

3) 권한 위임의 근거 마련

- 안 제31조제6항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별 지정의 유효기간 및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유통이력수입수산물별 신고절차, 수입유통이력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한 및 연장에 관한 내용은 하위법령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6)에서 정하고

-
- 6) 제4조(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중에서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지정해야 하며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률의 위임근거는 명확하지 않았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법률의 위임 없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 다만, 해양수산부는 절차적, 기술적 사항이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⁷⁾ 및 운영과정상 개정 빈도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사유로,

지정기한 및 연장, 신고절차 및 수입유통이력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보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현행법 제27조에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을 예시로 들고 있음.

7)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2023)」 pp.16~17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실체적인 사항 중 위임 사항을 정할 때에는 가능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서식과 같은 단순한 절차(집행명령)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실체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사항은 총리령·부령으로 정하기도 한다.”

○ 총리령·부령의 소관 사항 예시

-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 서식 등에 관한 사항
- 절차적·기술적 사항

3.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등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2(자료의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및 제31조에 따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식약서 및 관세청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수입신고 및 통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입 및 유통업자가 신고한 거래명세표의 대조·검증 등 작업을 수행하는 등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다만, 관계 부처 의견으로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 자료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 목적상 입수된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가 원칙이고,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서도 해당 정보의 제공을 법률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로서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⁸⁾,

8)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법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라. 그 밖에 급부·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5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관세청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제공 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에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 자료의 유출 및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문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22

-
- ⑥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⑦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⑧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참고 1

수산물 이력제 개요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식품에 대한 안전·안심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수산물이력제* 도입 추진

* 「수산물유통법」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에 대한 컨설팅·교육·물품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이력제 시스템 운영('24년 예산 45.4억)

- (참여품목/등록기관) 모든 수산물 참여가능(자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추진현황) 정보 입력단계를 축소*하고 Q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참여 기업·소비자 모두의 편리성 제고

* 입력횟수 : (기존) 4회(위판장, 중도매인, 가공기업, 판매자) → (개선) 2회(위판장, 가공기업)

** 조회방법 : (기존) 바코드를 스캔하여 이력번호 13자리 입력 → (개선) QR 스캔 후 즉시 조회

□ 이력제 표시사례

	
이력제 표시사례	
	
이력제품 생산사례	이력표시 내용

참고 2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개요

- **(목적)**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수입수산물에 대해 수입단계이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 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
 - * 수입·유통업자는 고시된 수입수산물을 양도 시 유통이력 신고·관리 의무
- **(법적근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의 지정)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제6조(이력조사 등)
- **(대상품목)** 21개 품목 ※(지정기간) 2023. 8. 28. ~ 2026. 7. 31.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꽂치, 식용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젓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활떡장어, 활방어,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냉동남방참다랑어
- **(대상업체)** 159,299개소('24년 기준)
 - * 유통이력 신고 의무 수입·유통업체 15,999개소, 소매업체 143,300개소
- **(관리인력)** 총 21명(전담 공무원 7명, 공무원 14명)
- **(예산현황)** 1,08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4년	'25년	증감
계	1,082	1,087	+5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운영 * 관리용역비	180	180	-
·유통이력관리 운영비 * 암차료, 교육홍보, 복리후생비 등	702	725	+23
·차량구입운영 * 전기차 충전비, 유지관리, 구입비	200	182	△18